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신설〉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61호)

2026. 2.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2
1.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신설 (안 별표 제97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1. 19.

다. 회 부 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에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출국납부금 분담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 진흥기금법」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 진흥부담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¹⁾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이하 ‘방위산업법안’이라 함)」(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이하 “방위산업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재원으로서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일반업체 등으로부터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이하 “방위산업진흥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부담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방위산업진흥부담금 관련: 「방위산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
4.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부담금)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부터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이하 “방위산업체등”이라 한다) 중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체등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방위산업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기금(신설)을 설치하고, 방위산업진흥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여 동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방위산업진흥부담금(안) 개요]

• (목적)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 (부과·징수) 국방부장관
• (부과대상) 방위산업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 (귀속)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신설)
• (부과금액)
– 방위산업체: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과·징수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부과·징수

[방위산업진흥기금(신설) 개요(「방위산업법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3조)	이 법의 목적(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함)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안 제4조)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 4.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안 제8조)	1. 방위산업체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 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교체·보완 또는 확장 나.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구 분	내 용
	다.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바.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 사. 방위산업체의 운영 아.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자.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희화된 방위산업물자등의 생산전용 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차.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방위산업체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 지원 3. 방위산업체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4. 방위산업체등이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영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사항을 위하여 구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²⁾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성격을 지님.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위산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데 제약이 있고, 기존의 예산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방산 분야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제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제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요구되고 있음.

참고로, 2022년 12월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서도 방위산업은 최근 글로벌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필요성 등 기존 정부구매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공급이 가능한 방위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방위산업진흥부담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방산 분야의 특수성에 대응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³⁾.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⁴⁾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방위산업진흥부담금은 방위산업의 기술 개발, 시설 투자, 원자재 비축 및 국외 수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변과 첨단 무기 수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지향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⁵⁾,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방위산업법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산정기준의 경우 방위산업체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의 범위, 일반업체는 방위산업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과요건의 핵심 요소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징수대상을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⁶⁾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⁷⁾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
-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출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 7)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중 지원을 받은 자를 부과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해당 집단과 방위산업 간의 실질적인 관련성 정도에 따라 명확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방위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특수 산업으로서 기존의 경직된 예산 시스템만으로는 글로벌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방위산업진흥기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징수된 재원을 시설의 설치·이전, 원자재 구매, 핵심기술 개발 등 「방위산업법안」 제8조에서 정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 목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의 부담금은 현행법 별표에 규정된 부담금과 목적 및 부과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은 아니지만 현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국방연구개발(R&D) 성과물(지식재산권, 기술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는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진흥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국가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 방위산업체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도 납부하고 「방위산업법안」에 따른 부담금도 납부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익에서 두 번의 지출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보임.

따라서, 「방위산업법안」 제5조제3항⁸⁾의 '차등 책정' 조항을 활용하여, 기술료 납부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주는 등 업체의 수출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임.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⁹⁾ 방위산업진흥부담금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거나 국가적 지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집단에게 부과되는 만큼, 동 사안의 경우 조세보다는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¹⁰⁾, 「방위산업법

8)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제5조(부담금)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이하 “방위산업체등”이라 한다) 중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체등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9)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

안」에서 방위산업진흥부담금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단기적으로 종결되는 과제가 아닌 지속적인 국가 전략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금의 운용 성과와 수출 시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담금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는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¹¹⁾을 제시하고 있음¹²⁾.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본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인 ‘방위산업체’ 및 ‘지원을 받은 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는

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1)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12)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방위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¹³⁾되거나 공적 지원을 통해 방산 물자 수출에 참여하는 집단으로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특정 집단으로서의 동질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부담금의 용도인 방위산업시설 설치·이전, 원자재 비축, 국산화 개발 및 수출 진흥 등은 방산 물자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부담금 의무자의 경제적 활동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됨.

특히, 방위산업의 고도화와 수출 확대는 개별 기업의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역량 강화라는 공적 과제 수행과 직결되며, 납부자 집단인 방위산업체 등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 아래 사업을 영위하고 수출 성과를 거두는 주체인 만큼 해당 과제 수행에 대한 집단적 책임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임. 아울러 조성된 기금이 다시 방산 기술 R&D 및 수출 금융 지원 등으로 환원되어 납부자 집단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라는 집단적 효용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집단적 효용성의 요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의 경우 비록 국가의 지원을 전제로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주된 사업 영역이 방위산업과 무관하다면 집단적 동질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부과 대상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국가적 사업인 방위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따른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위산업을 아울러 전 산업생태계의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개정안¹⁴⁾이 발의되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해당 제정안 및 개정안에 유사한 내용의 부담금(전략수출상생기여금) 신설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본 개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14)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3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u>97.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 자등 수출 진흥기금법」 제5조에 따 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 진흥부담금</u>

문 의 처
02)6788-5153